

	<b>AU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규정</b>	규정번호	3-7-22
		제정일자	2021.03.01.
		개정일자	2023.07.01.
		개정차수	2차
		소관부서	산학협력처 (AU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일학습병행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AU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센터는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산학협력처 산하에 둔다.

제3조(수행업무) 센터는 일학습병행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일학습병행 사업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 등 설치·운영
2.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 요건을 만족하는 협약기업 모집
3. 협약기업의 학습근로자 모집 및 채용 지원
4. 협약기업 학습근로자 현장외훈련(OFF-JT) 지원
5. 협약기업 현장훈련(OJT) 지원 및 기업현장교사 파견 지원
6.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방문모니터링, 훈련 진행상황 확인, 컨설팅을 통한 개선 유도 등
7. 협약기업 및 학습근로자 내부 및 외부 평가 지원
8. 협약기업과 학습근로자의 학습근로계약 지원
9. 그 밖에 협약기업 일학습병행 수행 시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제2장 조 직

제4조(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 대학은 일학습병행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둔다.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총 사업기간으로 한다.

제6조(전담자) 센터의 일학습병행 사업 전반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담자를 둘 수 있다.

##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단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장 또는 사업 총괄책임자로 한다.

1. 협약기업의 대표자: 4명 이상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소속 공무원: 1인

3.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지역일학습지원부장

※ 지역일학습지원부장은 발언권은 가지되,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함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직업교육훈련 관련 전문가, 관할 교육청 공무원, 사업주 단체 대표자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사업과 관련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임기는 조정될 수 있다.

제9조(회의 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장이 긴급하거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비대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록은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 교육과정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보고서에 의해 편성 및 운영한다.

② 수업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으로 운영한다.

③ 전공 및 교양과목의 경우 일학습병행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3.03.01.]

제11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결 및 평가에 의해 성적을 부여한다.

② 일학습병행 운영규정에 의거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 과목은 Pass/Fail로 평가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본조신설 2023.03.01.]

③ 일학습병행 전문대 재학생단계 참여 학생은 훈련기간에 해당하는 학기동안 성적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07.01.>

제12조(운영지침)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장 보 칙

제1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대학 제 규정 및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적용되는 사항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의 부서명 변경은 2023년 5 월 1 일부 시행한 조직 개편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